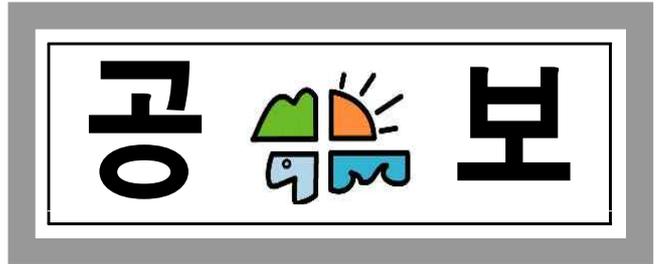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157호 2018년 8월 20일(월)

공 고

-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각종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의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정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로 속초발전의 성장동력과 소통시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중심원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원탁회의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원탁회의 구성·기능 등 운영규정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

다.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8조)

마. 의견청취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바.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수당 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감사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기획
감사실 (기획협력평가팀)
- 연락처 : 033-639-2109(FAX 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협력평가팀(033-639-21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중심원탁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중심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각계각층의 속초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원탁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추대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민단체, 경제계, 문화·관광계, 사회복지계 등 시정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을 각각 대표하거나 그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원탁회의는 순수 민간자문기구로서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의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정 자문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갈등요인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원탁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원탁회의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탁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5일 전까지 재위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야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탁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원탁회의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 또는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① 원탁회의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때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사무국의 간사는 원탁회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결과 조치) ① 토론주제 담당부서는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론주제 담당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원탁회의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원탁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탁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